#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

## 1 기본 현황

#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✓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노인학대 예방		
사업비	772,740천원	(국비)367,800천원	[시비]404,940천원
(당해년도)	기타 (예산 외)	[구비]	(기타)

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본부	어르신복지과	김복재 2133-7400	홍순옥 2133-7418	임승현 2133-7415

## 2 예산설명

□ 예산 총괄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7예산액 (A)	2018예산액 (B)	증감 (B-A)	
T T	2017예산역 (A)	2010에진꼭 (D)		(B-A)*100/A
계	(x447,035)	(x367,800)	(x△79,235)	(x△17)
	917,210	772,740	△144,470	△15
민간위탁금	(x-)	(x367,800)	(x367,800)	(x-)
	0	772,740	772,740	0
사회복지사업보조	(x447,035)	(x-)	(x△447,035)	(x△100)
	917,210	0	△917,210	△100

## 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8년 예산내역		
민간위탁금	○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(보조)	=	735,600천원

과목구분		2018년 예산내역		
	- 인건비 637,894,000원		=	637,894천원
	- 사업비 97,706,000원		=	97,706천원
	○ 종사자 처우개선비 34,140,000원		=	34,140천원
	○ 복지포인트 3,000,000원		=	3,000천원

### 3 사 업 설 명

#### □ 사업목적

○ 가족간 갈등 및 부양부담에 따른 어르신 학대사례의 상담, 보호, 예방활동을 강화하고, 어르신 인권보호와 시설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선해 나가고자 함

#### 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 -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 4.5
  -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
#### □ 사업내용

- 지원대상 : 노인보호전문기관(2개소)
- 사업내용
  - 상담사업 : 노인학대 24시간 상담전화(☎1577-1389) 설치 운영,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, 사례관리 및 사례판정위원회,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 서비스
  - 예방교육사업 : 대상자별 예방교육(노인 및 일반인, 신고의무자,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) 교재개발 및 교육대상자 확대
  - 홍보사업 : 대중매체 및 인터넷 홍보, 노인학대 예방캠페인 및 사진전, 기관방문 홍보활동 등
  - 지역사회연계사업: 노인학대 사례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, 노인보호전문기관 자문위원회 운영 등

#### □ 추진경위

- 2004. 12. 노인학대 문제부각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(1개소)
- 2011. 1. 노인보호전문기관 추가지정(남부, 북부), 1개법인 통합운영

#### ○ 2014. 5. 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법인 분리지정(북부)

#### □ 2018년도 추진일정

□ 2018년도 추진일정 (단위 :					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		
계		772,740			
세부추진계획 수립	2017.01~2017.01				
운영보조금 교부	2017.01~2017.12	772,740	시→노인보호전문기관		
사업수행	2017.01~2017.12		예방교육,상담 ,홍보 및 지역사회연계사업)		

## 4 사업효과

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5년도	<ul> <li>○ 학대피해 신고접수 : 855명 상담건수 : 8.561회</li> <li>○ 학대피해 어르신 일시보호(4개소) : 356명</li> <li>- 양로원 : 24명, 요양원 : 12명</li> <li>○ 학대피해어르신 의료지원(3개소) 91명</li> <li>- 외래치료 : 73명, 입원치료 : 18명</li> </ul>
2016년도	<ul> <li>○ 학대피해 신고접수 : 1,101명 상담건수 :13,056회</li> <li>○ 학대피해 어르신 일시보호(4개소) : 51명</li> <li>- 양로원 : 35명, 요양원 : 16명</li> <li>○ 학대피해어르신 의료지원(3개소) 123명</li> <li>- 외래치료 : 106명, 입원치료 : 17명</li> </ul>
2017년도	<ul> <li>○ 학대피해 신고접수 :1,060명 상담건수 :8,554회 (2017.9월말 기준)</li> <li>○ 학대피해 어르신 일시보호(4개소) : 25명(2017.9월말 기준)</li> <li>- 양로원 : 16명, 요양원 : 9명</li> <li>○ 학대피해어르신 의료지원(3개소) 102명(2017.9월말 기준)</li> <li>- 외래치료 : 51명, 입원치료 : 51명</li> </ul>

## □ 향후 기대효과

○ 고령화와 핵가족으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가족 간 갈등 및 부양부담 증대로 어르신학대 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

## 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4	(x319,083) 694,830	(x-)	(x-) 0	(x319,083) 694,830	(x319,083) 679,533		(x-) 15,297
2015	(x354,700) 741,560		(x-) 0	(x354,700) 741,560	(x352,032) 735,234	(x-)	(x2,668) 6,326
2016	(x344,718) 723,576	(x-)	(x-)	(x344,718) 723,576	(x344,718) 723,136	(x-)	(x-) 440